# 국회경호처법안 (신영대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9680

발의연월일: 2025. 4. 9.

발 의 자:신영대·강준현·노종면

염태영 • 추미애 • 김기표

김윤덕 · 정을호 · 김영환

천하람 의원(10인)

#### 제안이유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로 경찰·계엄군은 국회를 폐쇄하여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의 진·출입을 통제하고,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 권의 본회의 표결을 방해하려 한 사건이 발생하였음.

현행 제도에 따르면 국회를 경비하는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 소속으로 경찰청장·서울경찰청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데, 비상계엄 사건으로 국회 자체 경호·경비 인원 부재의 위험성이 드러나게 되었음.

이에 국회의장 직속 국회경호처를 신설하여 서울경찰청 소속인 국회경비대를 국회 자체의 경호·경비 인원으로 재편함으로써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 본연의 기능을 원활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국회경호처를 국회의장 소속으로 신설함(안 제3조).

- 나. 국회경호처는 국회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음을 명시하고, 그 소관 업무에 대해 규정함(안 제4조).
- 다. 국회경호처의 장의 지위를 규정하고 국회경호처의 소속공무원과 조직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라. 국회경호처 소속 공무원의 사법경찰권, 무기 사용 및 직권 남용 금지 의무 등을 규정함(안 제9조부터 제12조까지).
- 마. 국회경호처의 장은 소속공무원 등에게 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를 할 수 없음을 명시함(안 제13조).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장철민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제809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국회경호처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국회의 경호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국회 경호처의 조직·직무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 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경호"란 경호 대상자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신체에 가하여지는 위해(危害)를 방지하거나 제거하고, 국회의 질서를 유 지하며, 국회청사 등 특정 지역을 경계・순찰・방호・경비하는 등 의 모든 안전활동을 말한다.
- 2. "소속공무원"이란 국회경호처(이하 "경호처"라 한다) 직원과 경호처에 파견된 사람을 말한다.
- 3. "관계기관"이란 경호처가 경호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지원 과 협조를 요청하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을 말한다.
- 제3조(지위) 경호처는 국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소속하에 둔다. 제4조(직무) 경호처는 의장의 지휘·감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 1. 의장, 부의장 및 국회의원의 경호
  - 2. 국회를 방문하는 국내외 중요 인물의 경호

- 3. 국회(의장공관을 포함한다)의 경호, 방호 및 경비
- 4. 국회의 회의(「국회법」에 따른 본회의, 위원회 또는 소위원회의 각종 회의를 말하며,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를 포함한다. 이하 이 법에서 같다)의 질서유지
- 5. 국회 출입의 안전검색 및 관리
- 6. 테러(사이버테러는 제외한다) 예방 및 대응에 관한 사항
- 7. 그 밖에 국회의 경호에 관하여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 제5조(처장) ① 국회경호처의 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정무직으로 하고, 보수는 차관의 보수와 동액으로 한다.
  - ② 처장은 의장의 감독을 받아 경호처의 사무를 통할하고,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경호처 관련 사무 중 인사행정·예산회계·국유재산관리·물품관리·비상계획·공직자재산등록 등에 관하여 「국회사무처법」·「국가공무원법」·「국가재정법」·「국유재산법」 그 밖의 다른 법령이 국회사무처 또는 국회사무총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규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6조(임명동의 시 첨부서류 등) ① 「국회법」 제22조의5제3항의 규정에 따라 처장의 임명동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 1. 직업 학력 경력에 관한 사항
  - 2.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병역신고사항

- 3. 「공직자윤리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재산신고사항
- 4. 최근 5년간의 소득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의 납부 및 체납 실적에 관한 사항
- 5.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② 제1항에 따른 임명동의 요청 대상인 사람은 필요한 경우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서류를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해당 기관의 장은 이에 따라야 한다.
- 제7조(공무원의 임용) 경호처의 5급 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임면하고, 그 밖의 공무원은 처장이 임면한다. 다만, 의장은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처장에게 그 임용권의 일부를 위임할 수 있다.
- 제8조(조직) ① 경호처의 보조기관은 실장·국장 및 과장으로 한다. 다만, 소관업무의 특성상 실장·국장 또는 과장의 명칭이 적당하지 않은 경우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의 명칭을 달리 정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명칭을 달리 정한 보조기관은 이 법을 적용 할 때에 실장·국장 또는 과장으로 본다.
  - ② 처장·실장 및 국장을 직접 보좌하기 위하여 그 밑에 담당관을 둘 수 있으며, 처장 밑에 실 또는 국에 속하지 아니하는 과 1개를 둘 수 있다.
  - ③ 실장은 1급 또는 2급, 국장은 2급 또는 3급, 과장은 3급 또는 4급인 일반직이나 특정직국가공무원(「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라 임용된 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각각 보하고, 담당관은 2급부터 4급까지 또는 2급 상당부터 4급 상당까지인 별정직국가공 무원으로 보한다. 다만, 3급 이상 일반직 또는 특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과장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는 제외한다)중 그 소관업무의 성질상 전문성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정원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규칙으로 정하는 직위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할수 있다.

- ④ 경호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실·국·과와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과와 이에 상당하는 담당관의 설치, 사무분장은 처장이 정할 수 있다.
- 제9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처장은 직무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이나 그 밖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0조(소속공무원의 사법경찰권) ① 소속공무원은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에 대하여 직무상 또는 수사상 긴급히 필요한 범위 내에서 사법경찰관리(司法警察官吏)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경우 7급 이상 소속공무원은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하고, 8급 이하 소속공무원은 사법경찰리(司法警察吏)의 직무를 수행하다.

- 제11조(직권 남용 금지 등) ① 소속공무원은 직권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경호처에 파견된 경찰공무원은 이 법에 규정된 임무 외의 경찰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 제12조(무기의 휴대 및 사용) ① 처장은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공무원에게 무기를 휴대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무기를 휴대하는 사람은 그 직무를 수행할 때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그 사태에 대응하여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를 제외하고는 사람에게 위해
  - 1. 「형법」 제21조 및 제22조에 따른 정당방위와 긴급피난에 해당할 때

를 끼쳐서는 아니 된다.

- 2. 이 법에 따른 직무수행 중 인지한 그 소관에 속하는 범죄로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거나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소속공무원의 직무집행에 대하여 항거하거나 도피하려고 할 때 또는 제3자가 그를 도피시키려고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3. 야간이나 집단을 구성하거나 흉기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경우

로서 직무를 방해하기 위하여 소속공무원에게 항거할 때에 이를 방지하거나 체포하기 위하여 무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다른 수 단이 없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 제13조(경호 외 업무 지시 금지) 처장은 소속공무원, 제9조에 따라 협 조를 하는 직원, 그 밖에 국가기관 등의 소속 직원에게 경호 외 업 무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제14조(벌칙) 제11조 또는 제12조제2항을 위반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제15조(위임규정) 이 법에서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이 법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국회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 어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자목 중 "국회입법조사처의 정무직공무원"을 "국회입법조사처, 국회경호처의 정무직공무원"으로 한다.

② 국회사무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청사 관리·경비 및 후생"을 "청사 관리 및 후생"으

로 한다.